



제정 2023.03.10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5-약관-029 호(2025.04.17)

개정 2024.01.01

개정 2025.01.01

개정 2025.05.23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약관

제 1 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저축자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계약 체결에 적용되며, 이 약관에서 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수익증권저축약관’에 따른다.

제 2 조(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저축방법 등) ① 회사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만을 입·출금하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통장(거래카드, 거래내역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취급해야 한다.

② 회사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속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제 3 조(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 ①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가입일 현재 19 세 이상 34 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 1 호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여야 한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 년을 한도로 한다)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 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129 조의 2 에 의하여 계좌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 개 과세기간 중 1 회 이상 소득세법 제 14 조 제 3 항 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 천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 천 8 백만원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소득 기준연도는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가입 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하 “총급여액등”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는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을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적용한다.

라. 거주자가 「소득세법」제 12 조제 3 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는 비과세소득만 있는자로 보지 않는다.

②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등을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 155 조의 7 제 2 항에 따른 병적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국세청장으로부터 저축자가 제 1 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회사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저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저축자는 국세청장이 회사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가 국세청장에게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다만, 저축자가 사망, 해외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 4 조(저축대상 상품)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상품은 회사의 홈페이지(www.kebhana.com >> 고객센터 >> 펀드자료실 >> 청년형 장기펀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고지하기로 한다.

제 5 조(저축한도) 저축자는 연 600 만원 이내(해당 저축자가 가입한 모든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단, 만기 이후에는 한도정정(증액) 및 추가 납입을 할 수 없다.

제 6 조(가입기간 및 저축기간) ①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기간은 신규 매입체결일 기준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기간은 5년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은 불가하다.

제 7 조(전환 및 인출) ① 저축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제 232 조에 따른 전환형집합투자지구 형태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 납입한 저축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전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저축자는 납입한 저축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인출을 청구할 수 없다.

제 8 조(세제혜택) ①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5 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 분의 40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받을 수 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제 1 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1.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종합소득금액의 경우 6,7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이 없는 경우

제 9 조(세제혜택 제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한 저축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한 경우(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3 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제 3 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포함)에는 해당 과세기간부터 제 8 조 1 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제 10 조(추징) ①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한 저축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 부터 3 년 미만의 기간 내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저축에 납입한 총 누계액에 100 분의 6.6(지방소득세 포함)을 곱한 금액을 추징해야 한다. 이 경우 소득공제를 받은 저축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② 회사가 제 1항에서 정한 금액을 추징한 경우 회사는 저축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저축자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일부터 3 년 미만의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 2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사유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1.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2. 천재지변
3. 저축자의 퇴직
4. 사업장의 폐업
5.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6. 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7.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 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 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 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④ 저축자가 제 3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자료의 정보제공) ① 회사는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저축자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자료를 제출하며, 저축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연합회에서 조회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저축자의 서면상의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 총액의 세부내역(가입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별 가입내역 등)을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저축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전까지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저축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저축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저축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저축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저축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저축자가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3 조(관계법규 등의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등(「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과 개별 금융투자상품별 약관이 상충되는 경우 이 약관이 우선 적용된다.

③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 14 조(양도등의 제한) 저축자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계좌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담보물을 사용하거나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5 조(분쟁조정) 저축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1. 이 약관은 2023 년 03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규정은 2024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규정은 202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규정은 2025 년 5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 본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